

**제 2364호**  
2015. 05. 14.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공 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356호 : 세운재생비축단지구 3-4구역, 3-5구역, 3-6구역, 3-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행안틀 위한 공람공고. 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357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356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4구역, 3-5구역, 3-6구역, 3-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4구역, 3-5구역, 3-6구역, 3-7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예정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 ☎02-396-5762)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람요지**

가. 사업의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4구역, 3-5구역, 3-6구역, 3-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사업 개요

구 분	3-4구역	3-5구역	3-6구역	3-7구역	
시행위치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번지 일원	서울시 중구 산림동 250-1번지 일원	서울시 중구 입정동 97-4번지 일원	서울시 중구 산림동 275-3번지 일원	
시행면적	4,836.8㎡	2,195.6㎡	3,851.0㎡	2,732.3㎡	
사업시행자	더센터시티(주) 대표이사 선권수 (주소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229호)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				
건축계획	층수	지하7층/지상19층	지하4층/지상20층	지하6층/지상20층	지하4층/지상20층
	연면적	51,557.99㎡	19,969.26㎡	36,429.51㎡	25,044.91㎡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2. 공람기간** : 2015.05.14. ~ 2015.05.28.

**3.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62)

**4.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357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도시계획관련 제반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명칭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신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반영

###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조례」로 개정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 및 불필요한 반복심의 제한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심재생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문의전화 : 3396-5754, FAX : 3396-8777, 메일 : chinup@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삽입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조제1항 중“1회에 한하여”를“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 ④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 ⑤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를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의 제목“분과위원회”를“소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위원회)

-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해야 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자”를 “심의·자문 안건과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다음에 제3장(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13조(공동위원회의 목적)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주민편의성, 행정의 투명성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공동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
4.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규제행위완화에 대한 심의
5.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4.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제16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공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시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의2(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u> 서울특별시중구(이하 “중구” 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기능)</b>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u>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관계법령에서 <u>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위원회의</u>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li> </ol> <p><b>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b>                      ①위원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p> <p><b>제5조(위원회의 운영)</b> ①(생략)                      ②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b></p> <p><b>제2조(기능)</b>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u>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관계법령에서 <u>위원회의</u>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li> </ol> <p><b>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b>                      ①위원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p> <p><b>제5조(위원회의 운영)</b>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p>

현 행	개 정 안
<p>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생략)</p> <p>④ &lt;신설&gt;</p> <p>⑤ &lt;신설&gt;</p> <p><u>제6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제1분과위원회 :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 또는 자문사항</p> <p>2. 제2분과위원회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발행위허가 심의사항</p>	<p>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현행과 같음)</p> <p>④ <u>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u></p> <p>⑤ <u>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 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u></p> <p><u>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해야 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p> <p>1.(생략)</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생략)</p> <p>③<u>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자</u>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p> <p>④(생략)</p> <p>제10조(회의의 비공개)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p>	<p>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p> <p>1.(현행과 같음)</p> <p>2. <u>별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②(현행과 같음)</p> <p>③<u>심의·자문 안건과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자</u>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p> <p>④(현행과 같음)</p> <p>제10조(회의의 비공개)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p>

현 행	개 정 안
<p>되 <u>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되 <u>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u></p> <p><u>제10조의2(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u></p> <p><u>제13조(공동위원회의 목적)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주민편의성·행정의 투명성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4조(공동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u></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li> <li>2. 관계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li> <li>3. 구청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li> <li>4.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규제행위완화에 대한 심의</li> <li>5.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li> </ol> <p><b>제15조(공동위원회의 구성)①</b>  <u>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u></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u>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u></p> <p><u>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u></li> <li><u>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u></li> <li><u>3.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u></li> <li><u>4.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u></li> </ol> <p><u>제16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